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255

발의연월일: 2022. 12. 29.

발 의 자: 강기윤·김상훈·김희곤

최춘식 • 박형수 • 김승수

서병수 · 서범수 · 김용판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치료·재활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의료법」,「약사법」과 연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나,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이 지속적으로 적발되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음.

불법개설 의료기관, 약국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 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임, 이에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10항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에 명시하여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에 기 여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7조제2항제5호·제6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중 "제33조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로 한다.

제47조의2제3항 중 "제33조제2항·제8항"을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으로, "혐의"를 "혐의나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운영된 혐의"로 한다.

제57조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8항"을 "제33조제8항·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제47조의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 류) ①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 류) ① ----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 제33조제2항· 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8항ㆍ제10항 또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 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 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반하였거나 「약사법」제6조제3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항·제4항을 위반하여 개설·운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영되었다는 사실-----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 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 (3) ----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항·제8항·제10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 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 혐의나 「약사법」

행 혂 개 정 안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 개설·운영된 혐의-----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해 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생세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 (2) -----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 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 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의료법」 제4조제2항 또는 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 제33조제8항 · 제10항----•운영하는 의료기관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약사법」<u>제6조제3항・제4</u> <신 설> 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 아 개설・운영하는 약국